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증개정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0년 12월 8일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2월 11일 회부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 12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지방세과장 조택용)

(1) 제안이유

- 면허세 납세의무자의 단서조항에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안 제18조)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의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함 (안 제35조 제2항 제6호)

(2) 주요골자

- 면허세 납세의무자(안 제18조)
 - 제1항 단서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로 수정보완하고,
-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안 제35조 제2항)
 - 제6호 본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며,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안 제36조 제2항)
 - 본문 중 “영 제194조의14에서”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영194조의14에서”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재영)

현행 지방세관련 법령을 고찰해보면, 지방세법 제2조에서는 지방세의 과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 등이 있음.

이번에 개정 논의되고 있는 것은 면허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것으로서,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의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임.

안 제18조에 대한 의견임.

면허세란 면허 즉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60조),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음. 특히 2000년 12월 15일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1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제124조 제1항), 동법 제16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면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동법시행령 동조 제2항).

개정안 제18조는 개정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를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로 한정하여 규정한 조 제18조 단서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함.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5조 제2항 제6호에 대한 의견임. 현행 조 제35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사업 시행자를 일정한 경우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정전의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의 규정방식과도 동일함. 현행조 제 및 지방세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의 근거법령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및 도시개발법에 두고 있으나,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으로 제정됨으로써 종합토지세의 근거법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개정된 지방세법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6조 제2항에 대한 의견임.

현행 조 제36조에서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을 기본으로 하나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하고 있고, 개정안 제36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취지와도 동일한 것이라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년 12월 일
제 출 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제안이유

- 면허세 납세의무자의 단서조항에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안 제18조)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의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함
(안 제35조 제2항 제6호)

2. 주요골자

- 면허세 납세의무자(안 제18조)
 - 제1항 단서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로 수정보완하고,
-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안 제35조 제2항)
 - 제6호 본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며,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안 제36조 제2항)
 - 본문 중 “영 제194조의14에서”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영194조의14에서“로 함.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납세의무자 등) 단서 중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를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써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35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6호의 본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6조(과세표준) 제2항 본문 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써 영194조의14에서 정하는”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납세의무자 등)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u>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u></p>	<p>제18조(납세의무자 등) ①----- ----- ----- ----. <u>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u></p>
<p>제35조(납세의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5. (생략) 6. <u>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유보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u></p>	<p>제35조(납세의무자) ②----- ----- ----- ----- ----- 6. <u>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u> ----- ----- ----- ----- -----</p>
<p>제36조(과세표준)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u>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u></p>	<p>제36조(과세표준) ②----- ----- ----- ----- <u>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영194조의14에서 정하는</u> ----- -----</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p>	